

학비 환불 규정

■유학비자 장기생의 경우

비자 신청서류 제출 후의 취소
→선고료는 환불이 안됩니다.

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후, 수업료 납부 전에 취소
→선고료는 환불이 안됩니다.

입국관리국에서 재류자격인정증명서 교부후, 수업료를 납부하고 수업시작전에 취소
→선고료, 입학금은 환불이 안됩니다. 수업료는 재류자격인정증명서 상환 후, 환불됩니다.

유학비자 취득 후, 일본에 오기전에 입학할 사퇴한 경우
→선고료, 입학금은 환불 안됩니다. 수업료는 환불됩니다.

재외공관에 의해 유학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
→선고료, 입학금은 환불안됩니다. 수업료, 시설비는 비자발급 거부가 학교 직원에 의해 확인된 후, 환불됩니다.

입학후, 자퇴하는 경우
→환불이 안됩니다. 특별한 사정으로 환불하는 경우는 본인이 서면 신고 후, 제출한 시점에서 남은 수업료의 20%를 제외하고 환불됩니다. (선고료, 입학금, 시설비는 환불안됩니다.)

입학을 연기하는 경우
→연기한 기간의 수업료는 환불 안됩니다.

■유학비자 이외의 신청 · 단기생의 경우

입학금은 환불안됩니다.
수업개시 전까지 취소한 경우→1 만엔 청구됩니다.
수업개시 후에 취소한 경우→환불이 안됩니다.

※환불하는 경우 송금수수료는 본인부담입니다.

※본교 규칙에 의하여 퇴학처분 된 경우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